

고성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836
----------	-----

제출년월일 : 2003. 12.

제 출 자 : 고성군수

□ 목적

○ '93.11.25일(경상남도 고시 제392호) 최종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된 후 군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운동장 부지가 협소하여 확장을 통한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 및 고성스포츠 위상 정립과 고성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자문내용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계획 면적 : 244,600m²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기존 면적 : 92,560m²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증가 면적 : 152,040m²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계획 : 불임참조

□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도시관리계획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시 이를 반영

□ 그간의 추진경위

- 2003. 10. 17 : 용역완료(준공)
- 2003. 12. 12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

붙임 : 고성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을 위한 입안검토서 1부

고성군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 성 군
(문화관광과)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 확대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생활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요구 증가
- 기존 운동장의 부지가 협소하여 전국규모대회 유치 불가

2. 계획의 목적

- 전국 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운동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고성스포츠의 위상을 정립하고 고성관광지원산업의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관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동절기 전지훈련장소로 활용
- 기존의 협소한 체육시설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 주민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제공

3.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획기준년도 : 2003년**
- **계획목표년도 :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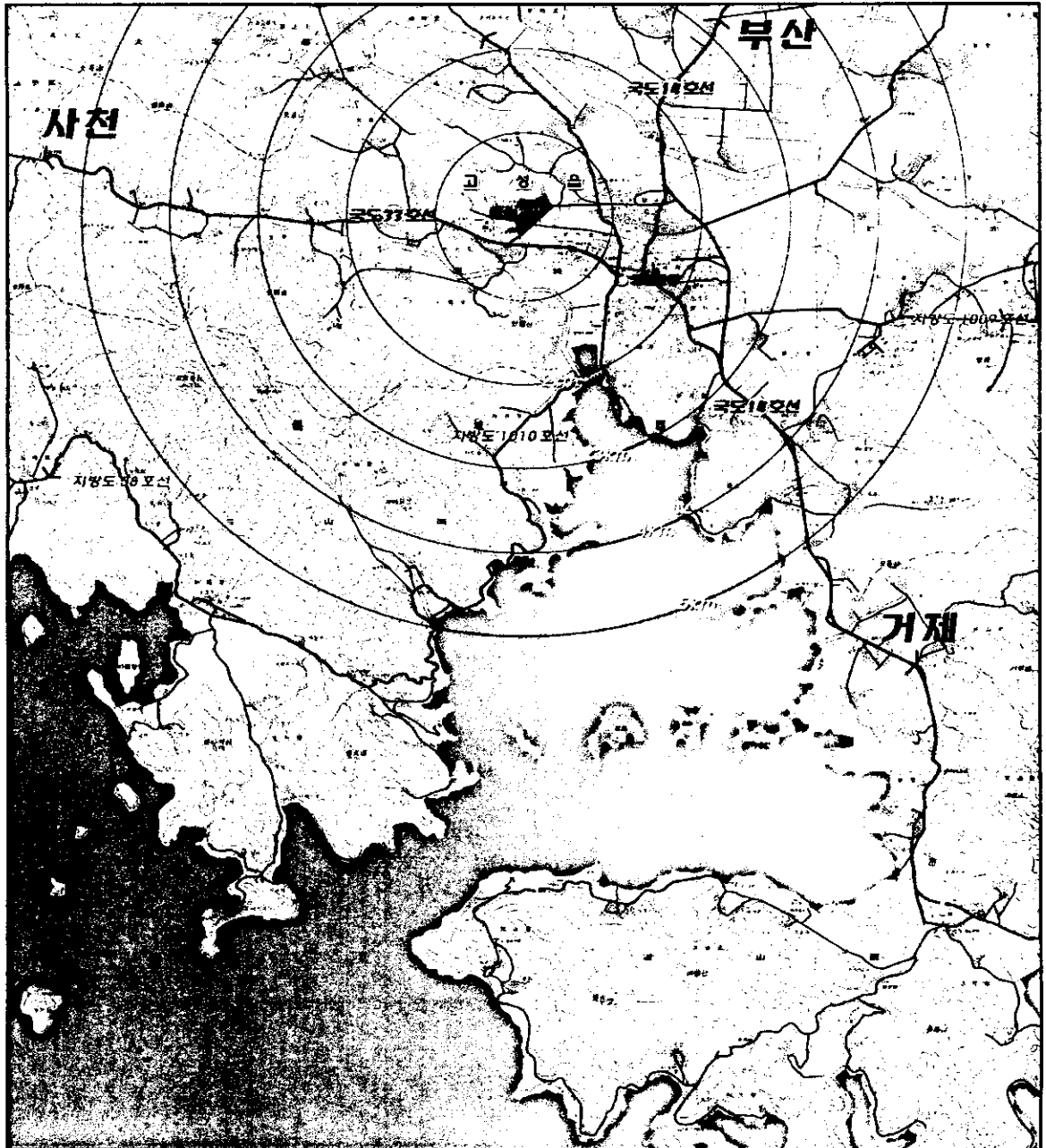
나.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교사리 일원
- 면 적 : 244,600 m²

다. 내용적 범위

- 토지적성평가
- 도시계획시설결정(세부시설결정포함)
- 교통성 검토
- 환경성 검토

위 치 도



계획대상지 현황

1. 대상지 현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현황

- 현재 도시계획시설(운동장)으로 기 결정되어 있음
(경고 제392호 93.11.25)
-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인접해 우량농경지인 생산녹지지역 입지
- 국도 33호선 (대로1-2호선)변에 위치하여 접근성 양호
-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필요 (운동장→체육시설)

운동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설 운동장	기월리	92,560	-	92,560	93.11.25 경상남도 392호	

운동장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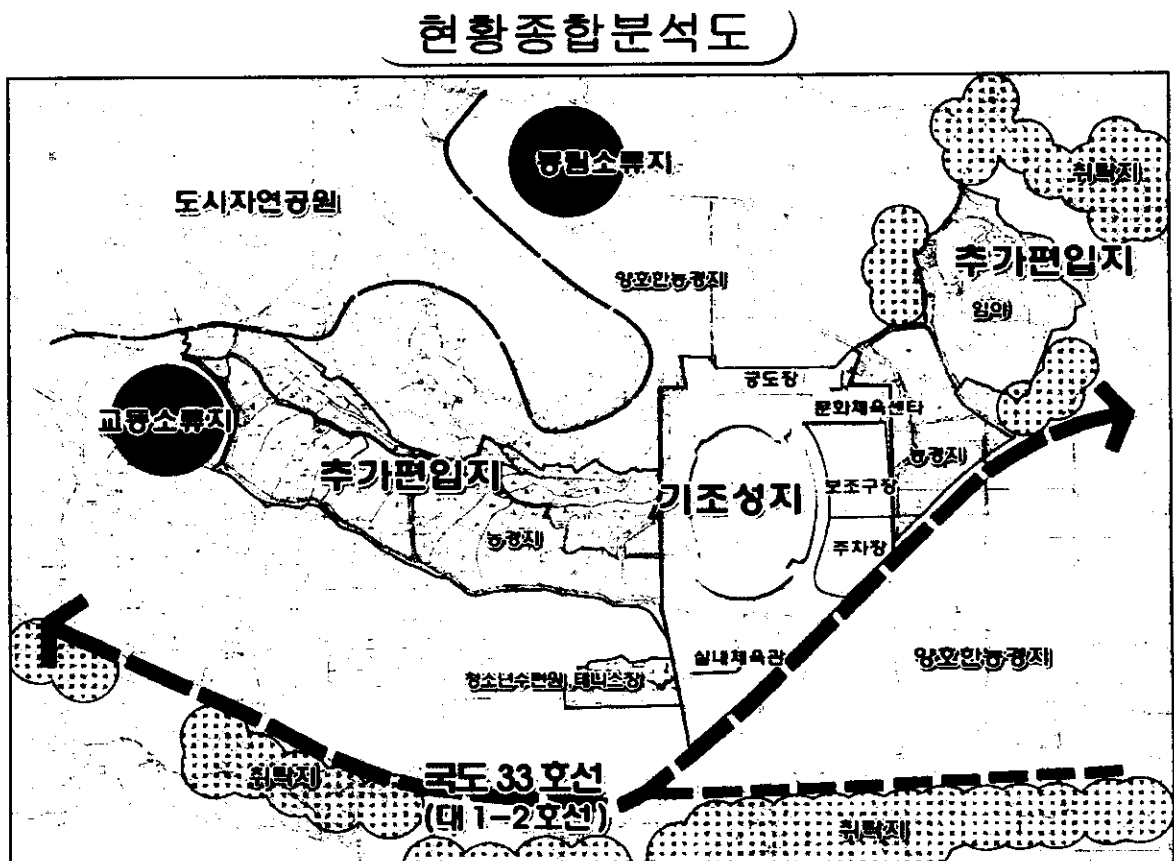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2,560	-	92,560	100.0	
주경기장	29,600	-	29,600	32.0	•국제공인2종형 •최대수용인원: 10,000명기준 •본부석, 다목적공간 등
실내체육관	2,300	-	2,300	2.5	•배구, 핸드볼, 농구, 탁구 등
보조경기장	8,000	-	8,000	8.6	
공도장	7,560	-	7,560	8.2	
운동시설	3,900	-	3,900	4.2	•씨름 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광장및도로	10,500	-	10,500	11.3	
주차장	10,300	-	10,300	11.1	
기타녹지	20,400	-	20,400	22.0	

나. 고성체육현황

- 현재 고성군내 생활체육인 현황은 총43개소 1327명이며, 축구,볼링,탁구,배드민턴,궁도,야구,테니스,검도,건강생활체조,배구,게이트볼,족구,씨름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체육인구 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에 따른 사회 기반시설의 공급은 부족한 상태임
- 사회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제경기 등의 유지 등 고성 관광마케팅 등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대정비가 필요함

다. 대상지 현황

- 현재 운동장우측으로 보조구장이 결정되어 있으나 공인2종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실정임
- 또한 실내 체육관의 노후화와 규모 협소화 등 차후 체육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2. 관련법규검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률	내 용
법제43 조 동법시행령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위치등을 관리계획으로 결정 체육시설로 설치

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구 분	내 용
제91조	운동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 (공인 1종 육상경기장 포함)
제99조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로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시설 (공인 2종 육상경기장 포함) 골프장(9홀 이상)
제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내 용
법제13조	운동종목 체육시설종류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 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 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 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 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 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 서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Ⅲ.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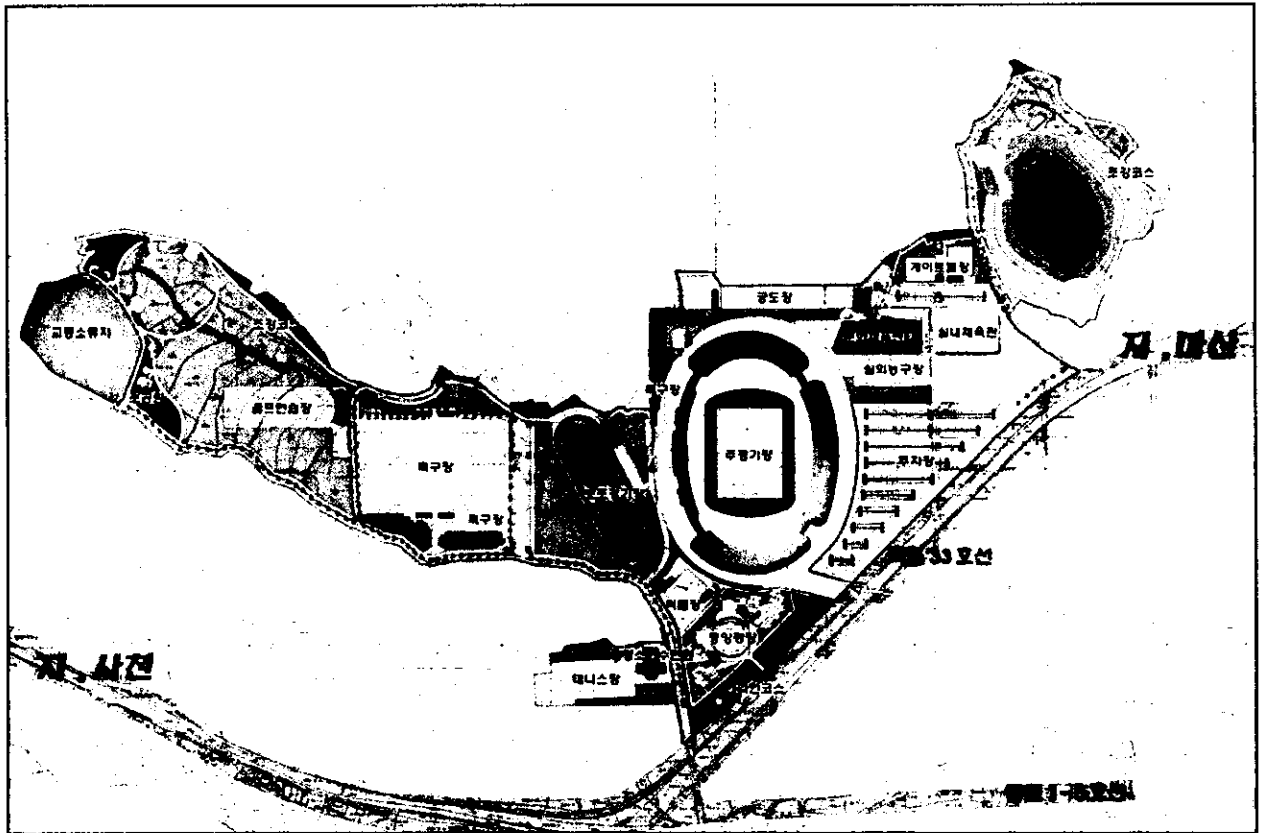
1. 전제

- ① 2003년1월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명칭변경 (운동장→ 체육시설)
-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수립(녹지율 40%)
- ③ 전국규모 대회 등의 유치 가능한 제2종 공인경기장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 수립 (육상경기장 보조구장의 설치)
- ④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설치 (축구장, 족구장, 조깅코스개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등),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설치(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문화생활영위를 위한 도시공간시설의 설치 (공원, 광장, 산책로 등)

2. 기본구상

구 분	개 발 방 향 설 정
면 적	244,600㎡
구역계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도시계획 결정면적에 대상지 동측의 농업진흥지역 일부와 임야 (산582-3외 2필지) 포함 • 서측의 농경지 일부, 서측하단부 테니스장 및 청소년 수련원포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관리시설의 설치필요)
토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용지규모산정 • 장래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정비 및 체육관 이전에 대비한 개발계획 수립 • 보조구장 (육상경기장)의 설치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씨름장등의 문화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계획
교통·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공간의 확대에 따른 진·출입구의 변경, 기존의 진·출입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시 도로로 활용가능) • 주간선의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해 입구에 감속 차로를 설치하고, 출구에 신호등 설치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주민편의 및 문화기능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편임

3. 개발계획



4.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2,560	증)152,040	244,600	100.0
주 경기장	29,600	-	29,600	12.1
실내 체육관	2,300	증) 4,824	7,124	2.9
보조 경기장	8,000	증) 1,000	9,000	3.7
문화체육센터	-	증) 5,076	5,076	2.1
청소년수련원	-	증) 476	476	0.2
체육관	7,560	-	7,560	3.1
운동시설	3,900	증) 20,062	23,962	9.8
주차장	10,300	증) 11,003	21,303	8.7
광장 및 도로	10,500	증) 27,746	38,246	15.6
기 타 녹 지	20,400	증) 74,953	102,253	41.8

IV. 향 후 일 정

2003. 10. 17 : 용역완료(준공)
2003. 12. 12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
: 관련실과협의(농지,국·공유지,환경,교통,문화·관광)
2003. 12. : 지방의회 의견청취
2003. 12. : 농지전용협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경남도 협의
: →농림부(12월경)
2003. 12 : 군계획위원회 심의(군수결정사항)
- 2003.12 ~ 2004. 1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절차

